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학생·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교 재학생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 도지사는 당해년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

제안년월일 : 1999. 5. 13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중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일부 현실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 이를 현실적·합리적으로 바로 잡아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

2. 수정 주요골자

조례안 제3조(대상자) 제2항중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대상자) 제2항중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p> <p>2. <u>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u></p> <p>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p>	<p>제3조(대상자) _____ _____ _____ _____</p> <p>1. _____ _____</p> <p>2. <u>고등학교 재학생</u></p> <p>3. _____ _____</p>